

## 급성 견관절 전방 탈구에 동반된 일반적이지 않은 관절외연 골절의 관절경적 치험례

### Arthroscopic Experience for Acute Traumatic Anterior Shoulder Dislocation with a Unusual Glenoid Rim Fracture

순천향 대학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이병일 · 최형석 · 김준범 · 민경대 · 나수균

견관절 탈구나 불안정성 치료에 대한 관절경의 이용은 최근들어 수술 시기 및 다양한 고정 기구의 발달에 힘입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라 하겠다. 견관절 전방 탈구에 동반된 전방 관절외연 골절의 빈도는 저자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까지 5.4%에서 44%까지로 보고되고 있다. 1956년 Rowe는 관절외연 골절이 동반된 견관절 탈구의 재발빈도는 견관절 단독 탈구나 다른 부위 견갑부 골절이 동반된 경우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한 이래 최근까지도 이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84년 Ideberg는 관절외연을 포함하는 견갑골 골절에 대하여 300례의 고찰을 보고하면서 크게 견갑와 골절을 I형으로 분류 다시 골편 위치에 따라 I-a, I-b로 세분하였고 관절와 골절을 II형에서 VI형까지로 분류한바 있다. 또한 1998년 Bigliani등은 25례의 재발성 견관절 전방 탈구에 동반된 관절와 병변에 대한 보고에서 I형에서 III-a, III-b형으로 세분하여 분류한바 있으며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혈적 치료는 여러 저자들이 보고하였는데 관절경적 치료에 대하여는 1997년 Heggland와 Parker가 처음으로 시도 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1997년 Zamudio는 전위된 관절내 관절와 골절에 대하여 관절경하 경피적 핀고정술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1998년 Cameron이 전방 관절외연 골절에 대한 관절경적 치료에 대한 증례를 보고한 이래 여러 저자들이 보고하였다. 저자들은 현재까지 관절외연 골절 분류에 이용되고 있는 Ideberg분류중 type I을 좀더 세분류한 Bigliani분류법에 명확히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는 급성 외상성 전방 견관절 탈구에 동반된 관절외연 골절에 대하여 관절경적 치료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27세 남자 환자로 내원 3일전 빗길에서 손을 짚으면서 넘어진후 발생된 좌측 견관절부 동통 및 관절 운동 제한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방문하여 방사선 사진상 견관절 전방 탈구 및 관절외에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분리된 관절외연 골절 진단하에 도수 정복 시행후 재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정복은 되었으나 분리된 골절편이 잔존하는 것을 확인후 sling and swath로 고정후 외래 재방문하였다. 환자는 Right hand dominant였으며 설계 사무소에서 제도에 관여하는 직업을 가졌으며 과거력상 외상 병력은 없었고 generalized laxity 소견, overhead sports activity도 없었으며 이학적 검사상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나 혈관 손상을 의심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 외래 방문시 골편의 위치 크기와 전이정도를 면밀한 관찰하기 위해 CT를, 동반된 견관절 손상여부 관찰을 위해 MRI를 시행 하였다. 수상 4주에 전신마취하에 진단적 관절경 술식을 시행하였는데 Bigliani type I과 유사하나 특징적으로 골편의 방향이 좀더 수평에 가깝고 전이된 골편이 하부 관절낭방향으로 inverted되어 있었고 골편과 labrum 사이가 detach되어 있고 unusual type을 확인하였으며 개방적 술식을 사용치 않고 골편을 원래 위치에 해부학적 정복후 headless acutrack screw(x2)를 이용하여 고정 하였다. 술후 2주간 sling and swathe로 고정 하였으며 그 후 점진적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행하였다. 최종 추시시 외회전의 경미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수상전 활동에 복귀하여 좋은 결과를 보였다.

저자들은 외상성 견관절 전방 탈구에 동반된 현재까지의 분류법 어디에도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관절외연 골절 1례를 관절경적 방법만으로 치료하여 경험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분류법을 좀더 보강해야 할것으로 간주되어 지는 증례로 생각되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